■ 자동차보험 상품 요약서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

보험종류	가입대상
개인용, 다이렉트개인용, 다이렉트개인용(인터넷)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 단, 인가된 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임)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다이렉트업무용 다이렉트업무용(인터넷)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 경승합차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 경화물차
영업용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① 대상 :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취지 :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 의무보험 관련사항

① 정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한도

대인Ⅰ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
대 물		2,000만원 이상

③ 특 징

○ 강제보험성 :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제한(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 폐차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Ⅰ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시 : 대인Ⅰ, Ⅱ(300만원), 대물(100만원)
- 무면허운전 사고 시 : 대인Ⅰ(300만원), 대물(100만원)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매1일 초과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5]

○ 미가입운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대인배상Ⅱ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특징 : 대인Ⅰ의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직접손해: 수리비용, 교환가액 -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 (2016.4.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보상한도 3/5/7천만원, 1/2/3/5/10억원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합니다.

④ 자기신체사고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구 분		사망/부상/후유장애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5,000만원
		1억원/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억원/1,000만원/1억원
		2억원/2,000만원/2억원
		2억원/3,000만원/2억원
		2억원/5,000만원/2억원

⑤ 자기차량손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동차와 타차간의 충돌 및 접촉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차량의 침수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조건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특 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대인배상Ⅰ		-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임의담보	공통적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Ⅱ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대물배상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 주요 특별약관

①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특정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ㅇ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ㅇ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ㅇ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ㅇ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ㅇ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ㅇ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공동물건에 한함)
- ㅇ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공동물건에 한함)

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특정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ㅇ 운전자 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ㅇ 운전자 연령 만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ㅇ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ㅇ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

ㅇ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ㅇ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기간 만료일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④ 기타

ㅇ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ㅇ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 경/4종화물자동차이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용 됩니다.
ㅇ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보험가액이 1천만원보다 낮을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승합차 및 다인승 승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료 분석표

저희 AXA손해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xa.co.kr의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료 산출 기초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① 일반물건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개인용	대인I	77.1%	22.9%	0.0%
	대물	75.1%	22.9%	2.0%
	기타	88.5%	9.5%	2.0%
업무용	대인I	78.2%	21.8%	0.0%
	대물	76.2%	21.8%	2.0%
	기타	89.8%	8.2%	2.0%
영업용	대인I	79.4%	20.6%	0.0%
	대물	77.4%	20.6%	2.0%
	기타	91.2%	6.8%	2.0%
이륜차	대인I	81.9%	18.1%	0.0%
	대물	79.8%	18.2%	2.0%
	기타	94.1%	3.9%	2.0%

② 공동물건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개인용 업무용 이륜차	대인I	87.7%	12.3%	0.0%
	기타	87.5%	10.5%	2.0%
영업용	대인I	92.5%	7.5%	0.0%
	기타	90.2%	7.8%	2.0%